

KOREA IPG

INFORMATION

issue 039

(일본특허청 위탁사업)

한국 Intellectual Property Group | 2018.3

발행 : 한국IPG 사무국(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서울사무소 지적재산팀)

전화 : 02-3210-0195

전자우편 : kos-jetroipr@jetro.go.jp

책임편집 : 浜岸 広明(하마기시 히로아키)

편집 : 曹恩実(조은실), 柳忠鉉(유충현), 朴晟希(박성희)



◎한국IPG의 활동

한국 지식재산세미나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최신 지식재산 동향'을

도쿄·오사카에서 개최했습니다.

한국 지재 2017년 10대 뉴스와 2018년 전망

2018년에 새롭게 바뀌는 지식재산제도

◎IP를 알아

한국IP뉴스

「신·지식재산의 최전선은 지금」

- 제주대학 지식재산 교육사업

- 국제재판부제도 도입과 전망



평창 동계올림픽은 한국과 일본선수들 모두의 멋진 활약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한국 지재 웹사이트를 이전하고 과거 웹사이트는 3월말에 폐쇄됩니다.

링크와 북마크를 하신 분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웹 사이트 URL: <https://www.jetro.go.jp/korea-ip>



한국 IPG 회원등록은 아래 URL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jetro.go.jp/world/asia/kr/ip/ipg/>

한국IPG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특허청의 지원으로 운영되며 회비는 없습니다.



「한국IPG Information」에 게재된 기고·번역문 등은 모두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 게재된 것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5G(제5세대) 이동통신의 시험서비스가 공개되었습니다. 5G이동 초광대역서비스는 LTE보다 20배 빠른 전송 속도(최대20 Gbps)를 제공합니다. 이와 같은 5G 이동 초광대역서비스에 관해 한국에서는 2017년에 특허출원된 건수가 2013년에 비해 몇 배나 되는지요?

①2배 ②5배 ③10배 이상

※ 정답은 본지 5페이지 하단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도쿄 세미나장 : JETRO본부 전시장)

◎한국IPG의 활동

한국 지식재산세미나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최신 지식재산 동향'을 도쿄·오사카에서 개최했습니다.

한국은 국가 차원에서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재정책 및 법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재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에 국제재판부를 설치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18년에 외국어 변론·증거 제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JETRO에서는 한국 특허청 청장과 지식재산 사법제도의 개혁에 힘쓰신 광부규 전 특허법원 판사를 모시고 2018년 1월 24일, 25일에 한국 지식재산 세미나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한국의 최신 지식재산 동향(일본특허청 위탁사업)'을 도쿄와 오사카에서 개최했습니다. 그 개요를 아래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료는 JETRO 한국 지재 웹사이트 (<http://www.jetro.go.jp/korea-ip>)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최신 지식재산 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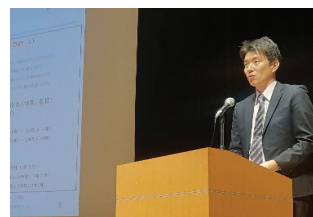
-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서울사무소 부소장 하마기시 히로아키

한국의 최신 지식재산정책·법개정

한국특허청은 2017년 11월 1일 신정책의 지식재산 분야의 마스터플랜으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식재산정책 방향'을 발표

했습니다. 특허가 무효가 됐을 시 특허 등록료 전액 반환, 악의적인 특허·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스마트업이 미래 가치에 기반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형 IP금융 확대,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미래기술을 활용한 특허행정 효율화 등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2017년에 시행된 주요 법률로는 특허법(심사청구기간 단축,



특허취소신청제도 신설, 특허결정후 직권재심사제도), 디자인보호법 (신규성 상실의 예외규정 확대), 부정경쟁방지법(행정청의 조사·검사 대상인 부정경쟁행위의 범위에 타인이 제작한 상품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전시하는 행위 등을 추가)등을 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도입하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 중입니다.



(오사카 세미나장 : 오사카공업대학 우메다 캠퍼스)

◎IoT, Industry 4.0시대를 맞이한 한국의 특허전략

-특허법인(유)화우대표변리사 최동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특허청 청장으로 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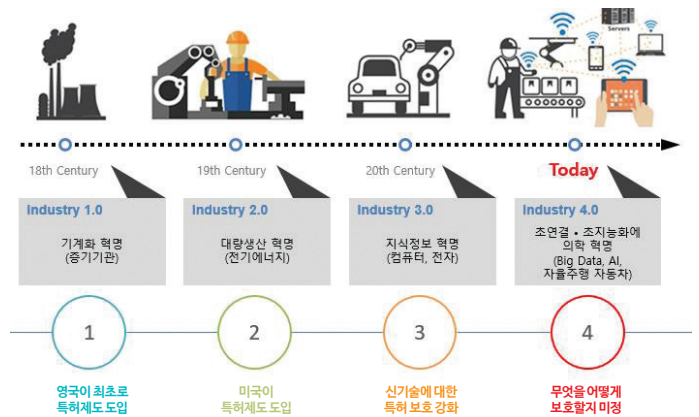
4차 산업혁명이란 초연결 초지능화에 의한 혁명

4차 산업혁명이란 인간이 방대한 데이터에서 필요한 것만을 추출하는, 즉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 자동차 등과 같은 초연결·초지능화에 의한 혁명을 의미합니다.

지재 세계에 있어서 과거 한국은 선진국 모델을 쫓아가기만 하면 되는 입장이었습니다만 현재는 정보통신분야 등 일부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한국보다 앞에 아무도 없는 분야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재혁명’이나 ‘도래한 미래’ 등으로도 표현되는 이러한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한국특허청은 어떻게 나아가면 자신도 발전하고 후발국을 리드할 수 있는지 고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제반 변화에 대해서 주로 법적인 측면에서 기본적 분석을 시행하는 정도이며 타국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 산업혁명과 지재권 제도의 변화



(출처)최동규 대표변리사의 발표자료(BCM Advanced Research자료 인용)

다만 한국특허청에서는 올해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 지원 사업’에 약12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스마트 센서, 사물 인터넷 등의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IP-연구개발(R&D)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IP 전략 개발 및 지원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참고로 최근 5년간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한국의 주요기술 분야별 특허출원을 소개하면, 증강현실 3,354건(42.6%), 인공지능 1,621건(20.6%), 빅데이터 1,236건(15.7%), 사물인터넷 1,069건(13.6%), 가상현실 601건(7.6%) 등의 순으로 출원되었습니다.

강하고 유연한 지재권을 지향해야

한국 지재권의 고민은 첫째 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①4차 산업혁명분야의 표준특허가 적음, ②무효율이 높음(2016년:49.1%), ③손해배상액이 낮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권리로 등록되면 좀처럼 뺏기지 않는 강한 지재권을 지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의 지재권은 유연하지 않습니다. 그 요인으로는 ①담당부처 간의 경쟁(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 방법을 둘러싼 한국특허청(특허)과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의 관할 다툼이나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둘러싼 한국특허청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의 관할 다툼), ②상표와 디자인의 충돌, ③영업비밀과 특허의 충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상표로 권리를 확보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디자인으로 보호를 해야 할 것인가. 또한 이 기술은 영업비밀로 보호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특허를 취득해야 할 것인가 등 권리 간의 그레이존에 관한 고민이나 문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형태의 지재권에 대한 대응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시대에서야말로, 본래 모든 지재권 제도는 “타인의 것을 허가없이 베끼는 것을 막기 위해 등장한 것”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Free-Riding방지라는 지재

권 본연의 원칙에 되돌아가야하며 그 의미에서부터 지재권은 언젠가 최종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약하자면 현재의 특허분류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상품이라도 법률적 논리에 휘말리지 않고 보호 가능하면서 기존의 것과 융합해 나가는 것이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유연한 지재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한국 특허소송제도의 변화와 전망

-법무법인 광장 (Lee&Ko) 변호사 광부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특허법원 판사로 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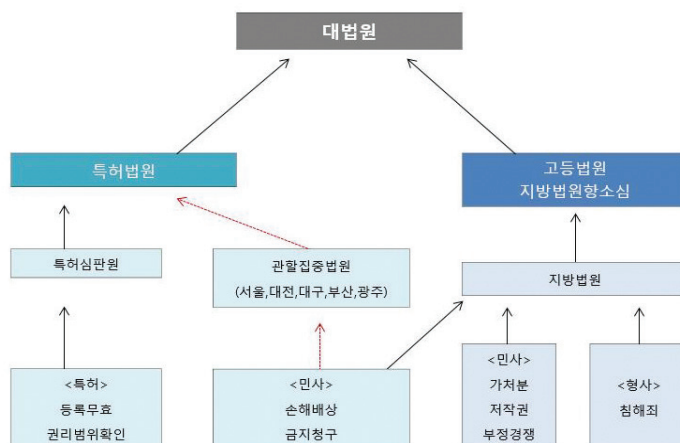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먼저 특허법원 판사의 근무기간 확대를 들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이 1998년에 설립된 이래로 2014년까지 판사의 근무기간은 부장판사는 2년 이하, 배석판사는 3년이었습니다만 2015년에 처음으로 4년의 장기근무자가 생겨 저도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판사의 전문성이 높아진 것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특허와 같이 기술적 및 법률적으로 특수한 분야에서는 경험이 짧은 판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각 법원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외부기관(주로 한국특허청) 혹은 자체선발한 기술전문가를 재판보조인력으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특징은 한국특허청 결정에 대한 재판의 객관성을 높이는 것과 법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한국특허청으로부터의 파견을 줄이면서 자체선발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는 점입니다.

또한 2016년부터 민사사건 중에 손해배상 및 금지청구 사건에 대해서 5개(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방법원에 관할을 집중하고, 그 항소심도 특허법원으로 변경한 것도 대표적인 전문성 강화 대책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림 참조). 나아가 사건의 범위도 특허, 상표, 디자인에만 국한하지 않고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직무발명 등에까지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관할집중에 의하여 특허법원에서는 침해소송 심리 매뉴얼을 2016년 3월 16일에 제정하고 심결취소소송 심리 매뉴얼도 2016년 9월 1일에 제정하였습니다. 동매뉴얼의 일본어 번역본을 JETRO에서 번역하여 JETRO 한국지재 웹사이트 및 특허법원 웹사이트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림〉소송 관할집중



(출처) 광부규 변호사의 발표자료

재판제도 국제화와 친특허정책(프로패턴트)경향이 뚜렷

특허법원의 재판 중 외국인 사건의 점유율은 1/3정도 (미국, 일본, 유럽 사건 순)로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특허법원의 큰 변화는 재판제도의 국제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7년 11월 24일에 국제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외국어 변론과 외국어 증거 제출 허가입니다. 지금까지 외국어 변론과 외국어 증거제출에는 각각 통역과 번역이 필요했습니다만 이것에 관한 예외를 인정한 것입니다. 법률에는 외국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영어 이외의 외국어도 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영어 이외의 외국어에 정통한 판사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일본어가 뛰어난 판사가 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일본어 변론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외국어 변론은 당사자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만 한국기업이 당사자인 경우는 당연히 한국어가 유리하므로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적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원고가 외국기업, 피고가 한국특허청인 사건이 외국어 변론의 주요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최근 한국에서는 친특허정책, 즉 프로패턴트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한국에서의 프로패턴트 경향을 설명하는 뒷받침으로는 ①특허법 개정(2016년 3월 29일)에 의하여 침해 증명과 손해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자료제출명령 신청이 가능해진 점, ②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3배로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점, ③특허 무효율이 감소추세인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설명한 한국의 재판제도의 전체적인 변화를 이해한 뒤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가면서 한국에서의 소송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IPG

한국 지재 2017년 10대 뉴스와 2018년 전망¹⁾

한국은 2017년 5월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하면서 9년만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제면에서는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경기회복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서는 2017년 한국 지재 토픽 중에서 특별히 인상 깊었던 것들에 대해 필자가 독자적으로 판단해 순위를 매긴 10대 뉴스 형태로 소개하면서 한국 지재 상황을 총괄하고 2018년 한국 지재를 전망해 보고자 합니다.

1. 2017년 한국 지재 10대 뉴스

10위: 한국 특허·디자인출원 감소세

일본은 계속해서 출원건수가 감소하는 반면, 한국은 2013년에 처음으로 특허출원건수가 20만 건을 넘고 2015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2016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고 2017년에도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실용신안 및 디자인도 출원건수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상표출원건수는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9위: 지재관련법 일부 개정

2017년 3월 1일, 개정 특허법이 시행되어 심사청구기간 단축(5년→3년), 특허취소신청제도 신설, 특허결정후 직권재심사제도 도입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2017년 9월 22일, 개정 디자인보호법이 시행되어 신규성 상실의 예외규정이 확대되었습니다.

8위: 특허청장에 성윤모 씨가 취임

2017년 5월 최동규 전 특허청장의 임기가 끝난 후, 정권교체의 영향도 있어 2개월 이상 청장 자리가 공석이었지만, 7월 26일에 성윤모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이 제25대 특허청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성 청장은 일본에서 체류한 적도 있고 일본에 관한 지식이 많아 향후 한일지재협력에 더욱 진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한국 특허청장의 임기는 2년입니다.

7위: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를 개원

2017년 5월 23일에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 개원식이 열렸습니다. 법원 내에 연구센터가 설치된 것은 한국 법원에서도 세

계 지재법원에서도 최초입니다. 이 센터는 특허소송제도가 법리 비교연구, 해외 지재법원·국내외 지재연구기관·학회 등과의 국제교류업무 지원, 국제재판부의 구체적인 재판절차 연구, 지재권법에 관한 국내외 자료수집 및 데이터 베이스화 등의 작업을 해 나간다고 합니다.

6위: 발명교육법(발명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한국정부는 발명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유치원·초·중고 교육에 반영하는 ‘발명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명교육법’) 및 동 시행령을 2017년 9월 15일에 시행했습니다. 한국정부는 지금까지도 각 지역에 발명교육센터를 설치하는 등 발명교육에 주력해 왔습니다만, 이번 법제화로 인해 발명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고, 미래를 짚어갈 어린이들의 창의성 육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5위: 특허허브 국가추진위원회, ‘지식재산부·지재비서관’ 신설을 제안

국회의원과 지재에 관한 산관학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 세계특허(IP) 허브국가추진위원회는 2017년 3월, ‘지식재산부·지재비서관’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한국 특허청,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정책국을 지식재산부로 통합하고, 여러 부처로 분산된 지재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통합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청와대에 지식재산비서관 자리를 신설해서 대통령의 지식정책 지원 및 지재정책 통괄·집행조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 후 구체적 논의 진전은 보이지 않지만 머지 않아 지식재산부가 신설될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4위: 제2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2017~2021)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은 지식재산기본법에 의거 2011년부터 5년마다 수립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정책의 최상위 계획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한국의 지재전략을 담은 제2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은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IP 국가경쟁력 확보’를 지향하며, (1)고품질 IP창출 및 사업화 활성화, (2)중소기업의 IP 경쟁력 제고 및 보호 강화, (3)글로벌시장의 IP 활동지원 강화, (4)디지털 환경 하의 저작권 보호 및 공정이용 활성화, (5)IP 생태계 기반 강화 등 5대 전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위: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 강화책’을 확정

2017년 9월 20일에 개최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한국 특허청은 ‘중소·벤처기업 혁신을 위한 지식재산보호 강화책’을 제안하고, 확정했습니다. 본 강화책에는 특허·영업비밀 침해 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탈취·사용행위를 부정경쟁방지

1) 이 기사는 2018.1.12호의 특허뉴스(경제산업조사회 발행)에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서울사무소 지재팀 하마키시 부소장이 투고한 기사를 요약한 것입니다.

법 상의 부정경쟁행위로 신설하는 내용,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명시하는 내용, 산업재산권분쟁조정·중재센터 설립 등이 담겨 있습니다.

2위: 특허청,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식재산정책 방향'을 발표

한국 특허청은 2017년 11월 1일, 신정권의 지식재산분야의 마스터플랜으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식재산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4대 추진전략인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강한 지식재산 창출', '공정경제를 뒷받침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미래에 대비한 지식재산권 기반 구축', '고품질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 및 14대 중점과제가 담겨 있고, 이것들을 통해 지식재산이 선순환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식재산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로 했습니다. 추진 전략별로 구체적 목표도 제시되어 있고, '특허 무효 시 등록요금 전액 반환', '특허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출원·등록비용의 세액공제' 등 주목할 만한 목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위: 국제재판부 설치법안 통과

IP Hub Court 추진위원회에서 한국의 지재법원을 국제지식소송의 핵심법원(hub court)으로 만들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재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이 국제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외국어 변론 및 증거제출이 가능한 '국제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법안이 2017년 11월 24일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올해 중반쯤 본 법률이 시행되어 특허법원 등에 국제재판부가 설치될 전망입니다.

2. 2018년 한국 지재 전망

2018년도 한국 지재제도는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2017년 10대 뉴스에서 1위로 뽑혔듯이 2018년 중반쯤에는 특허법원 등에 국제재판부가 설치되어 외국어 변론 및 증거제출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영어 이외에 일본어 허용 여부, 외국어 변론 절차 등 향후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질 구체적인 절차 내용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10대 뉴스에서 2위로 뽑힌 한국 특허청의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정책 방향'에도 나와 있듯이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정책이나 법개정도 올해 상세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특허권 침해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특허법 개정안이 2017년 7월 및 9월에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 중이며, 2018년 중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에는 국제재판부 설립에 맞춰 한국 지재소송이 크게 변화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IPG

2018년에 새롭게 바뀌는 지식재산제도

한국 특허청은 2018년 1월 11일 '2018년에 새롭게 바뀌는 지식재산제도·지원시책'을 발표했습니다.

2018년부터 바뀌는 제도로는 ①제4차 산업혁명관련 분야의 조기 권리와 지원, ②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③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이 있습니다. 아래에 일람을 게재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IPG

1. 제4차 산업혁명관련분야의 조기 권리화 지원

특허우선심사 확대 (2018년 상반기 예정)	제4차 산업혁명분야에 대해 기업이 특허를 선점하는 권리를 지원하기 위해 7대 산업분야(*)를 특허출원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해, 기존에는 16.4개월 소요된 심사기간을 5.7개월로 단축함 ※ AI, IoT, 3D 프린팅, 자율주행, 빅데이터, 클라우드, 지능형 로봇
디자인우선심사 확대 (2018년 1월 시행)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해, 기존에는 5개월 소요된 심사기간이 2개월로 단축됨

2. 중소 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연차등록료 감면 확대 (2018년 4월 예정)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허 실용 디자인의 연차등록료 감면을 30%~50%로 늘리고, 9년차까지 적용한 감면기간도 권리존속기간 전체로 확대함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2018년 2월 예정)	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원하는 IP 서비스를 선택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허바우처(500만~2,000만원 범위)를 제공함
특허키움리워드제도 (2018년 4월 예정)	중소기업 및 개인이 특허청에 납부한 연간출원 및 최초 등록료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금액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10~50%까지 차별화)을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다른 수수료를 납부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3. 대국민 서비스 개선

특허선행기술조사 결과 제공 (2018년 1월 시행)	전문인력이 부족해 선행기술조사를 하기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의 출원인을 대상으로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심사 전에 제공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함
일부지정상품 취소절차 간소화 (2018년 1월 시행)	상표권 설정등록 뿐 아니라 일부지정상품 포기 시, 별도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고 납부서에만 그 취지를 기재해서 제출하도록 간소화함



퀴즈 정답

정답은 '③10대 이상'입니다. 2013년에는 16건에 불과했으나 2017년에는 191건으로 출원이 증가하였습니다.(출처:한국특허청 2018년 2월 12일자 보도자료)



KOREA IP NEWS

※제트로 한국 지재 홈페이지에서 매일 제공되고 있는 지적재산권 관련 뉴스 중 일부를 게재했습니다. 상세한 기사, 그 외의 뉴스에 관한 것은 「한국지적재산 뉴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jetro.go.jp/world/asia/kr/ip/ipnews/>

① 특허심판 품질평가에 민간위원 최초 참여 | 한국관세청(2017.12.21)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품질평가 절차에 최초로 민간위원이 참여한 다. 특허심판원은 21일 오전11시 정부 대전청사에서 제1기 특허심판 자문 위원 위촉식을 하고, 이어서 품질평가위원회를 개회했다.

특허심판원은 특허, 상표, 디자인의 무효, 거절결정불복 등의 심판을 담당하며, 실질적으로 1심 법원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심판 품질평가는 특허법원에서 취소된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 연구 및 공유가 필요한 사안을 선정하여 심판관에게 환류하는 절차이다. 그간 심판 품질평가는 특허청 내부 인사로만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하였으나, 이번에는 외부 위원이 평가위원회에 과반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자문위원은 학계, 공공기관, 산업계, 변리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앞으로 심판품질 평가 뿐 아니라 심판정책 및 기술자문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② 4차 산업혁명 관련 디자인 우선심사 실시 | 한국특허청(2018.1.2)

특허청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등록 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실시하여 권리를 조기에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18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특허청은 정부시책이나 산업 환경 변화에 맞게 우선심사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으며, 현재 15가지 항목이 우선심사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번 디자인 보호법 시행령 개정도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됨에 따라 관련 분야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빠른 심사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디자인 심사기간은 출원 후 5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리지만 우선심사를 실시하게 되면 2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 여부 결정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기업 등 출원인은 디자인권을 조기에 확보하여 제품생산 및 판매를 빠르게 진행시킴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이번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선심사를 받고자 하는 기업 등 출원인은 우선심사신청서와 함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③ 특허청 'SKT 평창올림픽 후원사인척' 부정경쟁행위로 판단 | 한국특허청(2018.1.18)

특허청은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SKT의 2018 평창올림픽 홍보 캠페인 광고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여부를 조사한 결과 동 광고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광고 중단을 시정권고 하였다.

특허청은 동 광고로 인하여 SKT가 평창올림픽 공식후원사로 또는 조직위와 조직상·재정상 또는 계약상 어떤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케 함으로써 조직위뿐만 아니라 거액의 후원금을 지불한 KT 등 여러 공식후원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였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광고 마지막에 'SKtelecom' 이라는 대형문구를 배치한 것뿐만 아니라 SKT를 떠올리게 하는 배경음악, 슬로건, 회사명, 제품명 등을 '평창 응원하기', 'See you in PyeongChang' 등의 문구와 함께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SKT가 평창올림픽 공식후원사인 것으로 오인·혼동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⑤ 중국 온라인 유통 위조상품 게시물 20,302개 퇴출 | 한국특허청(2018.1.29)

생활용품 전문업체 A사는 중국에 특허까지 출원하고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려던 찰나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중국 현지 협력사를 통해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타오바오에 자사기술을 모방한 위조상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것이다.

전전공공하던 A사는 소수문 끝에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이 지원하는 '알리바바 온라인 쇼핑몰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대리신고'에 대해 알게됐고 도움을 요청했다. 보호원은 즉각 A사의 위조상품 유통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대리신고했고, 총 1,936개의 위조상품 판매게시물을 삭제해 A사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특허청은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우리기업의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 20,302개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그 규모는 정품단가 기준으로 약 45억원이며 평균 판매단가 및 판매게시물 당 평균 판매개수를 고려하면 약 1,84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전년 19,621개사 700여억 원과 비교해서 건수는 681건(약 3%), 규모는 1,148억원(약 160%) 늘어난 것이다.

⑥ 5G 이동통신 서비스, 평창올림픽에서 선보인다!! | 한국특허청(2018.2.12)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5G(5세대) 이동통신 시범 서비스를 선보임에 따라, 5G 이동통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허청은 5G 이동통신 규격에 대한 국제 표준화가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5G 이동 초광대역(eMBB1)) 서비스 관련 특허 출원이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3년, 2014년에 각각 16건, 27건에 불과했던 5G 이동 초광대역 서비스 관련 특허 출원은 2015년에 133건이 출원되어 전년도에 비해 무려 5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2017년에도 191건이 출원되어 관련 특허 출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대학 지식재산 교육사업 -지재교육 선도대학-



제주대학은 제주지역의 유일한 국립대학으로 한국 특허청의 지재교육 선도대학으로 지정되어 제주지역 발전을 위해 지식재산 교육의 선도 모델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호에서는 제주대학의 지식재산 교육사업에 관한 개요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제주대학 지재교육 선도대학으로서의 목표

한국 특허청의 지재교육 선도대학(주1)으로 지정된 제주대학은 제주형 지식재산 교육의 선도모델을 만들어 제주의 미래 전략사업인 융복합 창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재교육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식재산 교육 확대, ◇공학, 디자인, 경영을 포함한 융합형 교육 실시, ◇지재를 기반으로 한 연구개발(IP-R&D), ◇IP인증제 도입, ◇지재 복수학위제 등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식재산 전담 교수를 채용하여 2017년 3월에 지재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교육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2. 지식재산 교육 확대

대학교 1학년 부터 '지식재산 이해' 과목을 시작으로 2학년에는 '상표와 브랜드', '디자인과 생활기술', 2~3학년에는 '지재를 활용한 연구개발(IP-R&D)', '특허맵 작성', 그리고 대학원생에게는 '지식재산 경영' 등 단계적으로 레벨업한 지재교육 커리큘럼을 작성하여 이에 맞게 지재관련 강좌를 다수 개설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지재를 기반으로 한 연구개발(IP-R&D)

대학 연구개발에 빠질 수 없는 지재 활용으로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한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등 지재기반의 연구개발(IP-R&D)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 IP인증제 도입

지재 강좌의 수강 실적과 IPAT(아래 참조)의 성적을 토대로 소정의 조건을 충족한 학생에게 총장명의로 지재교육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 인증제도는 지재를 학습하는 학생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것으로 취업과 기업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됩니다.

5. T3(Teaching the Teacher) 프로그램

학생 대상으로 지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는 교직원 지재 교육이 필요합니다. 업무에 바쁜 교직원을 위해 점심시간을 활용한 런치 특강이나

학교 휴가 중에 단기집중 특강 등을 개최함으로써 교직원의 지재 스킬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6. 지식재산 능력시험 IPAT 교육 및 지원

한국을 대표하는 지식재산 능력시험으로는 한국 특허청 산하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IPAT(Intellectual Property Ability Test)가 있습니다. 제주대학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IPAT 대비 집중특강과 수험응모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 상반기에는 99명의 학생이 시험에 응시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주대학에서는 지재교육 선도대학 지정을 계기로 지식재산 교육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제주지역 발전과의 연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12월에는 제주에서 한일·한중일 특허청장회의와 한중일 특허청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한중일 특허청장이 모인 자리에서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지재전략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제주대학도 본 심포지엄에 참가하였습니다. 

(주1)

<지재교육 선도대학이란?>

한국 특허청은 2011년부터 지재교육 선도대학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대학을 지재교육 선도대학으로 지정하고 지재 전문가를 전문교수로 채용하여 지재교육 커리큘럼이나 지재교재를 개발하는 등 각 대학의 실정에 맞춘 지재교육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성과로 2016년에는 1,023 강좌가 개설되었고 2만9,014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사업 전과 비교하면 지식재산 강좌는 20배, 수강인원은 15배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제주대학 외에 연세대학, 영남대학, 서울과학기술대학이 제6차 지재교육 선도대학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번 호 해설자>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서울사무소

하마기시 히로아키 부소장(일본특허청파견)

1998년 특허청 입청, 정보처리분야 심사관·심판관, 국제과 과장보좌, 심판과 과장보좌, 지식재산활용 기획조정관 등을 거쳐 2017년6월부터 현재

File No.111

국제재판부제도 도입과 전망



법정에서 외국어로 변론할 수 있고 외국어로 된 자료를 번역없이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국제 재판부 제도가 최근 국회에서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외국인에게 유리한 사항들을 잘 숙지하여 활용한다면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다.

1. 국제재판부 제도의 내용 및 취지

대한민국 국회는 2017년 11월 24일 소위 '국제재판부' 제도의 도입을 의결했다. 국제재판부의 요지는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변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정에서는 한국어만을 사용하되 통역을 할 수 있다는 법원조직법 제62조와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는 반드시 번역문을 첨부해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277조의 예외를 지식재산소송에 한하여 인정한 것이다. 대상법원은 특허법원과 지식재산 소송을 담당하는 5개 지방법원이다. 다만, 국제재판부에 배정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제재판부 도입에 관한 논의는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회 IP HUB-국가 위원회 및 대법원의 IP HUB-COURT위원회에서 논의가 시작되었고, 특허법원 사건 약 33% 정도가 외국인 사건이라는 사실과 한국의 IP 소송을 아시아의 중심, 세계의 중심으로 만들어 법률적, 경제적 도약을 성취하겠다는 의지가 배경이 되었다.

2. 외국인에 미치는 영향

국제재판부는 외국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만들어 외국인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므로, 외국인은 그 취지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정한 요건에 따라 외국어로 변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이 있더라도) 직접 법정에서 출석하여 영어나 일본어로 변론함으로써 재판부에 더욱 정확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고, 영어나 일본어로 된 문서를 그대로 제출함으로써 번역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소송대리인이 영어나 일본어로 변론하는 상황을 직접 방청함으로써 당사자의 주장이 재판부에 정확하게 전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이점도 있을 것이다.

3. 전망

이 제도는 대통령이 개정법안을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시행된다.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관해서는 대법원 민사소송규칙이나 특허법원 실무지침에 상세히 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시행 초기에는 약간의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어로 된 증거를 번역 없이 제출하는 것은 종전부

터 재판부가 외국어를 그대로 봐왔고, 번역문을 제출하더라도 비용관계상 전문보다는 발췌부분만 번역하여 제출해 왔으므로, 무리 없이 시행될 것이다. 그러나 외국어로 변론하는 것은 재판부나 소송대리인이 모두 한국인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다. 영어나 일본어에 능숙한 한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원어민과는 많은 차이가 있고, 특허의 청구범위 해석에 있어서 미묘한 의미 차이를 재판부와 상대방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은 한국어로도 무척 어려운 일이므로, 외국어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과감하게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최근의 'IP 열풍'과 궤를 같이한다고 본다. 특허권의 쉬운 등록과 특허권의 강력한 행사를 통하여 외국인 내지 한국인에게 특허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IP 열풍'은 이미 4~5년전부터 시작된 것으로서, 종래의 특허 진보성 판단기준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만간 일정한 판단기준이 정립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때까지는 과도기적 'IP 열풍' 시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외국인으로서는 이 제도를 잘 활용하여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번 호 해설자〉

곽부규 법무법인 광장(Lee & Ko)

IP-GROUP 파트너 변호사.

1994년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졸업.

2000년 사법연수원 제29기 수료.

2000년~2016년 춘천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중앙법원 및 특허법원 판사. 2016년부터 현직.

단행본으로는 '디자인소송의 이론과 실무'.

논문으로는 '성명상표의 유사여부 판단기준', '의약 용도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등이 있다.

(김수·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서울사무소 하마기시 히로아키 부소장)